

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월할계산한다.)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400,000이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300,000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200,000이다.
- 20×1년 4월 1일 퇴직종업원에게 ₩12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7월 1일 현금 ₩16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20×1년 이후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은 없다.
- 순확정급여부채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 ① ₩193,000 감소 ② ₩198,000 감소 ③ ₩200,000 감소
④ ₩202,000 감소 ⑤ ₩211,000 감소

2. (주)세무의 20×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간접법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주)세무의 20×1년도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 당기순이익: ₩70,000	○ 법인세비용: ₩30,000
○ 이자비용: ₩27,000	○ 감가상각비: ₩40,000
○ 자산과 부채의 증감	

계정과목	기초금액	기말금액
매출채권(순액)	₩120,000	₩140,000
선급이자	50,000	53,000
재고자산	110,000	100,000
이연법인세자산	25,000	32,000
매입채무	100,000	130,000
선수금	80,000	70,000
미지급급여	210,000	230,000
당기법인세부채	30,000	25,000

- ① ₩98,000
 ② ₩125,000
 ③ ₩127,000
- ④ ₩130,000
 ⑤ ₩138,000

3.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는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자산이 ₩56,000일 때, 20×1년도 기초재고 원가는?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	₩200,000
총매입액	₩530,000	712,000
매입할인	20,000	-
총매출액	-	830,000
매출환입	-	30,000
순인상액	-	35,000
순인하액	-	25,000
정상파손	-	5,000
비정상파손	14,000	22,000
종업원할인	-	15,000

- ① ₩106,000
 ② ₩120,000
 ③ ₩134,000
 ④ ₩145,900
 ⑤ ₩151,500

4.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는 단일상품만 판매하고 있고,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동평균법(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말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를 함께 확인한다. (주)세무의 20×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자	적요	수량	단위당 원가
1월 8일	매입	300개	₩200
3월 2일	매출	250	-
6월 9일	매입	300	200
7월 13일	매출	250	-
12월 13일	매입	300	200

(주)세무의 20×1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80이며, 실제 수량은 380개로 확인되었다. (주)세무는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108,000일 때, 20×1년 말 재고자산의 정상감모수량은?

- ① 2개 ② 6개 ③ 10개 ④ 18개 ⑤ 20개

5. 법인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②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④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6.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다른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
- ②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③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 ④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 원가를 조정한다.
- ⑤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의 영향은 고려하나,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7. 환율변동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한다.
- ②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③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 ④ 매 보고기간말의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8.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건설기간 3년, 총 계약수익 ₩65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건설계약 관련 연도별 당기발생원가 및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설계약으로 인해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은?

구분	20×1년	20×2년	20×3년
당기발생원가	₩200,000	₩220,000	₩300,000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	300,000	280,000	-

- ① ₩20,000 ② ₩60,000 ③ ₩90,000 ④ ₩110,000 ⑤ ₩130,000

9. (주)세무는 구매금액 ₩2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세무의 제품을 구매할 때 1포인트 당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중에 (주)세무는 고객에게 총 ₩1,000,000을 판매하면서 500,000포인트를 제공하였다. 판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0이고 고정금액이다. (주)세무는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0.5(합계 ₩250,000)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 현재 100,0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500,000포인트 중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2년 말 현재 180,0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교환될 포인트 추정치를 새로 수정하여 500,000포인트 중 30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에 대해서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 ① ₩40,000 ② ₩80,000 ③ ₩120,000 ④ ₩180,000 ⑤ ₩200,000

10.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본사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연수합계법 상각)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20×3년 초 동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하였다. 동 건물은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20×4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2년 말	20×4년 말
순공정가치	₩180,000	₩145,000
사용가치	190,000	135,000

동 건물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 ① 영향없음 ② ₩60,000 감소 ③ ₩30,000 감소
 ④ ₩30,000 증가 ⑤ ₩60,000 증가

11.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주)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 7. 1.	20×1. 10. 1.	20×1. 12. 1.	20×2. 7. 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200,000	₩300,000	₩100,000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7. 1.	₩100,000	20×1. 12. 31.	8%
일반차입금 A	20×1. 1. 1.	500,000	20×2. 12. 31.	10%
일반차입금 B	20×1. 7. 1.	1,000,000	20×2. 6. 30.	6%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① ₩44,632 ② ₩52,632 ③ ₩55,211 ④ ₩59,211 ⑤ ₩80,000

12. (주)세무의 20×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100,000(1주당 액면금액 ₩100, 발행주식수 1,000주)이고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은 ₩200,000이며, 이익잉여금은 ₩100,000으로 자본총계는 ₩400,000이다. 20×1년 중에 발생한 (주)세무의 자기주식거래는 다음과 같다.

- 2월 2일: 자기주식 60주를 1주당 ₩600에 취득하였다.
- 3월 3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700에 처분하였다.
- 4월 4일: 자기주식 10주를 1주당 ₩500에 처분하였다.
- 9월 15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00에 처분하였다.
- 10월 30일: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0,000이다.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거래를 회계처리한다. (주)세무의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총계는?

- ① ₩341,000 ② ₩351,000 ③ ₩361,000 ④ ₩405,000 ⑤ ₩441,000

13. 다음 중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ㄴ.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ㄷ.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ㄹ.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텔을 소유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며 자가사용부동산이다.
- ②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③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④ 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⑤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15. 농림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②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 ③ 옥수수과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 ④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 ⑤ 원양어업, 천연림 벌채 등과 같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주)세무의 20×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자본금은 ₩1,000,000(1주당 액면금액 ₩1,000)이고, 자기주식과 우선주자본금은 없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무상증자를 20% 실시하였다. 20×1년도 회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초 미행사 신주인수권: 6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주당 ₩3,000
- 20×1년도 당기순이익: ₩1,200,000

(주)세무의 20×1년도 회석주당이익이 ₩800일 경우, 보통주 1주의 평균시가는?
(단, 20×1년 말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는 없었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① ₩3,000 ② ₩3,750 ③ ₩5,000 ④ ₩6,000 ⑤ ₩7,500

17.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연속상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발행 시 시장이자율은 6%이며, 사채발행비 ₩26,422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세무는 20×1년도 이자비용으로 ₩101,243을 인식하였다. (주)세무는 사채의 60%를 20×3년 1월 1일 ₩270,000에 조기상환하였으며, 나머지 40%는 만기상환하였다. 동 사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유효이자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500,000
- 이자지급: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지급
- 상 환: 20×1년부터 20×3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500,000씩 연속상환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6%	5%	6%
1	0.9524	0.9434	0.9524	0.9434
2	0.9070	0.8900	1.8954	1.8334
3	0.8638	0.8396	2.7232	2.6730

- ① 영향없음 ② ₩4,388 증가
 ③ ₩10,650 증가 ④ ₩15,279 증가
 ⑤ ₩24,388 증가

1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은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
- ③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19.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다. 20×1년 12월 31일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2년 1월 1일 재무위기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채의 조건을 변경(무이자로 20×5년 12월 31일 원금 ₩1,000,000 일시 상환)하였으며, 조건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장이자율은 20×1년 초 10%이고, 20×2년 초 12%이다. 동 사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사채발행시 거래원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12%	8%	10%	12%
1	0.9259	0.9091	0.8929	0.9259	0.9091	0.8929
2	0.8573	0.8265	0.7972	1.7833	1.7355	1.6901
3	0.7938	0.7513	0.7118	2.5771	2.4869	2.4018
4	0.7350	0.6830	0.6355	3.3121	3.1699	3.0374
5	0.6806	0.6209	0.5674	3.9927	3.7908	3.6048

- ① ₩206,017 증가 ② ₩213,977 증가 ③ ₩248,517 증가
- ④ ₩253,517 증가 ⑤ ₩282,277 증가

20.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 이 때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 ②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 ③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 시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때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④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것이다.
- ⑤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21. 20×1년 2월 1일 영업을 개시한 (주)세무(12월말 결산법인)는 단일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을 1대당 ₩3,000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수량은 20×1년에 500대, 20×2년에 1,000대이고,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2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주)세무는 동종 업계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내에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보증비용은 1대당 평균 ₩1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세무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품의 품질보증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제품보증비(A)와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충당부채(B)는? (단,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20×1년 보증이행	20×2년 보증이행
20×1년 판매분	6대	7대
20×2년 판매분	-	12대

- | | | | |
|----------|--------|----------|--------|
| (A) | (B) | (A) | (B) |
| ① ₩1,500 | ₩1,800 | ② ₩2,000 | ₩1,800 |
| ③ ₩2,000 | ₩2,000 | ④ ₩3,000 | ₩2,000 |
| ⑤ ₩3,000 | ₩3,000 | | |

22.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1,980에 취득하여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고,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 동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치표를 이용한다.)

- (주)세무는 20×1년 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주)한국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부터 동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는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만기에 수취할 원금은 ₩900,000으로 추정하였다.
- (주)세무는 20×2년 말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20×2년 말 (주)한국의 신용손상이 일부 회복되어 20×3년 말에 이자 ₩70,000과 만기원금상환액 ₩9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가 각각 ₩680,000과 ₩840,000이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 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114,238이다.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인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34,500 감소한다.
- ③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48,633 증가한다.
-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으로 인하여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16,215 감소한다.
- 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20×1년 말 자본은 ₩171,980 감소한다.

23.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20%를 ₩42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20×1년 1월 1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00,000으로 장부금액과 일치하였다. (주)세무는 (주)한국의 보통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며, (주)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주)세무가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한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 20×1년 10월 1일에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원가 ₩35,000인 재고자산을 ₩50,000에 판매하였으며, (주)한국은 20×1년 말 현재 (주)세무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50,000 중 ₩20,000을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200,000이고, 기타포괄이익은 ₩20,000이다.

- ① ₩438,800 ② ₩442,800 ③ ₩455,800 ④ ₩458,000 ⑤ ₩462,800

24. 위험회피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파생금융자산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기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비파생금융부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

25. (주)세무는 여러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합제품 A와 B, C를 주산물로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부산물 X가 생산된다. 1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와 중간제품 F, 부산물 X가 생산되며, 중간제품 F는 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결합제품 B와 C가 생산된다. 1공정과 2공정의 결합원가는 각각 ₩100,000과 ₩40,000이다. 결합제품 B와 C는 각각 3공정과 4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각 공정의 추가가공원가는 각각 ₩10,000과 ₩20,000이다.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으로 원가를 인식한다.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A	결합제품 B	결합제품 C	부산물 X
단위당 판매가격(₩)	100	150	200	20
생산량(개)	1,600	1,000	800	200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결합제품 B의 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 ① ₩58,800 ② ₩60,000 ③ ₩63,200 ④ ₩65,500 ⑤ ₩67,600

26.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10%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20×1년의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활동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동	원가동인(활동계층)	원가동인당 활동원가
작업준비	작업준비횟수(배치수준)	?
재료가공	기계작업시간(단위수준)	₩80
품질검사	생산량(단위수준)	60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2,000개와 1,440개이다.
- 제품 A와 B의 실제 직접노무원가는 각각 ₩420,000과 ₩260,000이다.
- 제품 A와 B의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1.2시간과 1.5시간이다.

작업준비의 활동원가(총액)는?

- ① ₩174,400 ② ₩175,600 ③ ₩176,800 ④ ₩178,400 ⑤ ₩179,200

27.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당기의 기초제품 재고액은 ₩5,520이다.
- 기초재공품 수량은 300개(완성도 80%)이며, 기말재공품 수량은 250개(완성도 60%)이다.
- 당기 투입물량은 1,400개이며, 당기 완성품 수량은 1,300개이다.
-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하고,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에 배분한다.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50이다.

당기의 매출원가가 ₩63,840일 때, 기말제품 재고액은?

- ① ₩8,320 ② ₩8,430 ③ ₩8,560 ④ ₩8,650 ⑤ ₩8,780

28.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 20×1년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조간접원가 추정 예산식	$₩52,000 + ₩3.5 \times \text{직접노무시간}$
○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4시간
○ 기준조업도(생산량)	2,600개
○ 실제생산량	2,400개
○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9
○ 조업도차이	₩4,000(불리)
○ 능률차이	2,100(불리)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 ① ₩81,000 ② ₩83,700 ③ ₩86,400 ④ ₩89,100 ⑤ ₩91,800

29.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40%를 예정배부하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한다. 당기의 실제 발생액은 직접재료원가 ₩98,000이고, 직접노무원가 ₩42,000이며, 제조간접원가 ₩56,000이다. 20×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	기말
재공품	₩4,000	₩7,000
제품	16,000	12,000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 ① ₩195,800 ② ₩196,000 ③ ₩196,400 ④ ₩197,000 ⑤ ₩199,800

30.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모든 원가는 실제 발생액이며, 직접재료원가는 ₩38,000이고, 직접노무원가는 ₩32,000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초재공품 수량	300개(전환원가 완성도 40%)
○ 당기 완성품 수량	1,200개
○ 기말재공품 수량	350개(전환원가 완성도 60%)
○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	₩65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① ₩51,850 ② ₩52,350 ③ ₩53,450 ④ ₩54,950 ⑤ ₩55,750

31. (주)세무는 보조부문 S1과 S2, 제조부문 P1과 P2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S1	S2	P1	P2	
부문원가	₩80,000	₩160,000	-	-	
S1	30	60	?	?	150 시간
S2	400	200	380	220	1,200 kWh

보조부문원가는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한다.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보조부문원가가 ₩140,000인 경우, 보조부문 S1이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시간은?

- ① 27.6시간 ② 28.8시간 ③ 30.0시간 ④ 31.2시간 ⑤ 32.4시간

32. (주)세무는 제품 A와 B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4월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활동	원가동인(시간당)	활동원가
작업준비	작업준비시간	₩136,800
조립작업	기계작업시간	276,000
품질검사	품질검사시간	11,970
합계		₩424,770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560개와 1,20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40개와 5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작업준비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하다.
- 제품 A와 B의 제품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27분과 15분이다.
- 제품 A와 B의 품질검사는 2배치당 1회 이루어지며, 회당 검사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하다.

제품 A에 배분될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 ① ₩180,810 ② ₩182,420 ③ ₩185,250 ④ ₩186,340 ⑤ ₩187,680

33. (주)세무는 20×1년 제품 A를 단위당 판매가격 ₩500에 1,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연간 고정원가는 ₩60,000(감가상각비 ₩14,000 포함)이며,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300단위이다. (주)세무의 법인세율이 30%일 때,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수량은?

- ① 200단위 ② 220단위 ③ 240단위 ④ 260단위 ⑤ 280단위

34. (주)세무의 A사업부는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투자(투하)자본	₩500,000	가중평균자본비용	12%
세전영업이익	200,000	최저필수수익률	10%

A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단, 법인세율은 25%이다.)

- ① ₩60,000 ② ₩70,000 ③ ₩80,000 ④ ₩90,000 ⑤ ₩100,000

35.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단일 제품 A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당기 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이다. 제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45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총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	50	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	10,000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이 많은 경우, 20×1년 제품 A의 기말재고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 ① 350단위 ② 400단위 ③ 420단위 ④ 450단위 ⑤ 500단위

36. (주)세무의 20×1년 제품 A와 B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제품 A	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	₩500	₩1,000
단위당 변동원가	300	500
단위당 기계작업시간	1시간	2시간
최대 판매가능수량	1,000단위	1,500단위

(주)세무의 20×1년 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이 3,400시간일 때, 최적의 제품배합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 ① ₩800,000 ② ₩830,000 ③ ₩850,000 ④ ₩900,000 ⑤ ₩930,000

37. (주)세무의 20×1년 4월 제품 A의 매출액은 ₩16,000(단위당 판매가격 ₩100)이고, 총비용은 ₩20,000으로 ₩4,00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공헌이익률은 25%이다. 4월과 5월의 원가구조는 동일하며, 5월의 목표판매수량을 200단위로 설정하고 광고선전비 ₩2,150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하였다. 5월의 세후목표이익 ₩1,000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법인세율은 20%이다.)

- ① ₩115 ② ₩122 ③ ₩132 ④ ₩142 ⑤ ₩155

38. (주)세무가 자가제조하고 있는 부품 A의 10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	감독자 급여	₩20,0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	50,0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주)국세로부터 부품 A 100단위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분석 중이다. (주)국세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중 30%는 회피가능하고, 감독자는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주)세무가 (주)국세에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 ① ₩700 ② ₩750 ③ ₩800 ④ ₩850 ⑤ ₩950

39. (주)세무는 상품매매기업으로 20×1년 3분기의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7월	8월	9월
매출액	₩12,000	₩15,000	₩18,000

(주)세무의 상품매입 중 40%는 현금매입, 60%는 외상매입이고, 외상매입대금은 매입한 달의 다음 달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세무의 예상 매출총이익률은 25%이다. 매월 말의 상품재고로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를 보유할 때, (주)세무가 상품매입대금으로 20×1년 8월에 지급해야 할 현금지출액은?

- ① ₩9,625 ② ₩9,725 ③ ₩9,825 ④ ₩10,125 ⑤ ₩10,225

40. (주)세무는 20×1년 제품 B의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판매하려고 한다. 제품 B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000,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5,000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이다. (주)세무는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의 급여지급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 방안 1: 고정급여 ₩40,000을 지급
○ 방안 2: 고정급여 ₩20,000과 매출액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세무는 제품 B와 유사한 제품 A의 과거 경험자료를 기초로 제품 B를 50단위와 60단위 판매할 확률을 각각 40%와 60%로 평가하였다. (주)세무가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할 경우, 그 기대영업이익은?

- ① ₩7,600 ② ₩8,000 ③ ₩8,600 ④ ₩9,600 ⑤ ₩11,000

행정소송법

4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 동일하다.
- ③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효가 있고 이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④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
- 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행정소송규칙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 손해의 내용 및 그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① ㄱ: 30일, ㄴ: 중대한
- ② 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 ③ ㄱ: 60일, ㄴ: 중대한
- ④ 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 ⑤ 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43.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②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③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 ④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정판결	ㄴ. 행정청의 소송참가
ㄷ. 집행정지	ㄹ.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 ① $\neg$
② $\perp, \equiv$
③ $\sqsubset, \equiv$
④ $\neg, \perp, \sqsubset$
⑤ $\neg, \perp, \sqsubset, \equiv$

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 ②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③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④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⑤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46.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 ①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 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③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을 3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하여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④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⑤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4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상적격 ② 행정심판전치
- ③ 처분의 위법성 ④ 소의 이익
- ⑤ 피고적격

48.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이다.
- ② 처분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더라도 승계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는 않는다.
- ③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통지한 자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 ④ 지방법무사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49.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 ② 취소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③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④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 ⑤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50.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 ③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 ④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 ⑤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51.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 ㄷ.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은 90일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 ②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 ④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53.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된다.
- 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54. 판례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②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③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 ④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55.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의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사립학교 교원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 ⑤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56.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가)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나)까지 (다)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가: 당사자소송, 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다: 피고
- ② 가: 당사자소송, 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다: 원고
- ③ 가: 당사자소송, 나: 판결시, 다: 피고
- ④ 가: 취소소송, 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다: 원고
- ⑤ 가: 취소소송, 나: 판결시, 다: 피고

- ①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③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④ 집행정지의 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⑤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① 당사자소송 ② 항고소송
③ 민중소송 ④ 민사소송
⑤ 예방적 금지소송

- ①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재처분의무의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 ②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 ③ 간접강제는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
- ④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⑤ 간접강제 결정에는 당사자의 변론을 거쳐야 한다.

- ① 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 ② 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 ③ 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처분으로서 성립한다.
- ④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지 처분은 아니다.

61.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
- 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
- ㄷ.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면허지정조건 위반이라는 사유와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2.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②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치요건흡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④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 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3. 취소소송 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한다.
- ②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 ④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은 적법하다.
- ⑤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세액을 직권으로 산출할 수 있다.

64.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할 수 없다.

65.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청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 ②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 ③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처분청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④ 처분 상대방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청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⑤ 처분 상대방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태도

66.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연무효인 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②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원고는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⑤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67. 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당사자 ② 주문 ③ 청구의 원인 ④ 이유 ⑤ 법원

68.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후에 행정청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④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⑤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69.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처분등을 취소하는 ()은 그 사건에 관하여 ()인 ()과 그 밖의 관계()을 기속한다.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① : 판결, : 피고, : 행정청 ② : 판결, : 당사자, : 처분청
 ③ : 확정판결, : 피고, : 행정청 ④ : 확정판결, : 당사자, : 처분청
 ⑤ : 확정판결, : 당사자, : 행정청

70.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②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④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71.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으로서 인정된다.
- 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 ④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되어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무효 확인도 가능하다.
- ⑤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 분할 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72. 다음 사안을 다툼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자격의 확인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 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②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③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④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⑤ 판결의 기속력은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

73.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 ②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
- ③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④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국가가 아닌 과세관청이다.
- 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74.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할	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ㄷ. 집행정지	ㄹ. 재량처분의 취소

- ① $\neg$
② $\neg, \rightleftharpoons$
③ $\perp, \vdash$
④ $\perp, \vdash, \rightleftharpoons$
⑤ $\neg, \perp, \vdash, \rightleftharpoons$

75.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 ②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⑤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진다.

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②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판결시이다.
- ④ 당사자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그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77.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 ②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③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 ④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78.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 ②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때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동일 노선상의 신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다투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⑤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79.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

- ① 거부처분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당사자소송 ④ 무효등확인소송
⑤ 재결취소소송

80.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분된다.
- ②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
- ③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 ⑤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